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 10. 11-----사하구청장

나.회 부 일 자 : 2004. 10. 11

다.상 정 일 자 : 제122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4.10.28)상정.채택

2. 제안설명요지(장일룡 총무과장)

가. 제안이유

- 현재 주민등록 사무의 동위임조례에 의거 시·군·구청장의 위임을 받아 읍·면·동장이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을 교부하고 있으나 읍·면·동장도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관련조례 권한위임 규정이 불필요하게 되었으며
- 인터넷으로 주민등록등·초본 교부시 시장·군수·구청장 명의로 교부됨으로 주민등록 사무의 동위임조례의 규정과 불일치됨으로 개정이 필요함.

나. 주요골자

- 인터넷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시 시장·군수·구청장의 명의로 교부되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뿐만 아니라 읍·면·동·출장소장도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이 개정(2004.3.22, 법률 제7201호)되어 관련 주민등록업무의동위임조례(제2조) 권한의 위임중 등·초본 열람 및 교부 관련 규정 삭제.

3. 관계법령

- 주민등록법 제18조

4.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주민등록법 제18조에 주민등록등·초본의 교부권자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2004. 3. 동법 개정시 읍·면·동 출장소장도 교부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 현재 동장이 교부하고 있는 것은 사하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에 의거 구청장으로부터 위임된 사무였으나, 개정된 법제18조에 동장에 게도 교부권자로 명문화하여 위임할 필요가 없어졌으므로 조례로 위임된 조항을 삭제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5. 질의답변요지 : 생략

6. 토 론 요 지 : 없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